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01호
----------	-------

2018. 10. 24.

건명	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토지민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0. 1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0. 15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」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「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상담원 위촉 시 자격기준을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함.(안 제2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」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「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